



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문

이 내용은 지난 12.9개최되었던 “새로운 건강진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회의” 개최결과로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작성하여 '95. 12. 18 노동부에 제출된 건의문이다.

근로자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

1. 현행제도의 복합적 문제

- 근로자의 건강진단제도가 '95. 5. 1. 일부 개정되어 특수건강진단은 노동부에서, 일반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시행케 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건강진단에 대한 목적과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.
-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진단을 의료보험과 연계하여 질병을 치료해주는데 목적을 두고있고 노동부에서는 질병이 일어나게된 근로환경, 개인의 건강관리상황 등 예방에 목적을

두고있어, 건강진단제도의 정책적 기초도 각각 상이하다.

- 따라서 보건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정보자료 활용이 어려울뿐만 아니라, 관리책임의 혼란으로 효율적 관리대책도 마련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.
- 특히 특수검진의 경우 일반검진과 분리실시하게 됨에따라 검진제도의 내용과 운용에서 오는 상호연계성 미흡, 불편, 비능률 등으로 효율성이 감소되어 직업병 관리에 장애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.

2. 특수검진제도개선의 기본방향

〈기 본 방 향〉

- 근로자 욕구기대에 부응하는 검진내용 마련
- 예방관리의 1차적 기본업무는 보건관리자 주도
- 특수검진의 특성화로 직업병관리체계 확립
- 검진·분석의 신뢰와 전문성 확보
- 사업주의 자율적 보건관리 구현

〈중 점 내 용〉

- 사업장 유해요인에 대한 조사·예방관리 등 1차적 기본업무는 보건관리자 책임하에 실시
- 유해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수검진에 대한 판정은 산업의학전문의에게 전담
- 1차 특수검진단계에서의 직업병 유소견자 조기발견을 위해 검사항목 강화
- 직업병 유소견자는 산재요양 단계까지 연계관리
-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국가지원 특별관리 대책 강구
- 사업주가 보건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

3. 제도개선의 구체적 실천방안

가. 보건관리자(산업보건의)의 역할, 책임, 권한강화

- 사업장내 유해요인 조사, 파악
- 의료기관선정 및 건강진단계획 수립

나. 산업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활용

-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의학전문의가 전담 판정
- 특수검진의 규정 검사항목 이외에 필요시 검사항목(선택검사항목 설정)의 확대등 재량권 부여

다. 특수건강진단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조치

- 1차 특수검진에서의 유소견자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진단항목 확대
- 산재요양보상까지 연계관리하기 위한 기준 마련
- 직업병 유소견자의 기준과 개념을 재정립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시행
 - 건강관리구분 개선
 - 개인별 전산관리
 - 일정기준 이상(검사소견, 측정노출 초과 등) 유소견자에 대한 정기적 추적관리 검사제도 실시
 -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

라. 특수검진과 일반검진과의 연계(보건복지부와 협의사항)

- 특수검진과 일반검진의 실시방법 개선

	특수검진	일반검진
(1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반기에 우선 실시 ○ 전액 사업주 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수검진 대상자를 포함하여 산안법과 관계없이 연중실시되어 특수검진대상 사업장의 경우 산안법에 의한 특수검진 실시후 6개월 간격 후 실시
(2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반기에 우선 실시. ○ 일반검사항목은 의료보험비, 특수검사항목은 사업주 부담 ○ 추적관리 대상은 후반기 재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검진 대상자만을 위주로 연중 실시 ○ 사업주가 제출한 실시계획서를 참고하여 특수검진 대상자가 있는 사업장은 후반기 실시토록하여 특수 대상자의 기피 누락방지

- 사업주는 의료보험조합에 검진계획서 제출시 일반 및 특수검진 대상자를 구분 표시하고, 사

- 본 1부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(특수검진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누락여부 확인 검토)
- 일반검진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는 특수검진기관(산업의학 전문의)의 의견을 참고하여 후속적인 조치
 - 특수건강진단개인표 양식을 일반검진개인표와 같은 형태로 개선하여 공동 활용
 - 일반검진결과 질병자 현황과 사후관리 조치를 사업주로부터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의무화
- 마.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대책(50인미만 보건관리자 선임제외 대상)**
- 특수검진비용 전액 산재기금 지원(일반검사항목은 의료보험비)
 - 소규모 사업장의 검진 난이도, 검진기관의 기회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일반검진 병행 실시도록 인센티브 제공(검진누락 및 직업병관리 사각지대화 예방효과)
 - 소규모 사업장 전담 지정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진수행능력과 내실검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설비 및 특장차량구비 조치
- 바. 특수건강진단, 보건관리대행, 작업환경측정기관 간의 연계운영**
- 동일 사업장에 대한 특수건강진단, 보건관리대행,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각기 다를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우선적 실시
 -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제출시 특수검진대상에 의한 의견제시
- 작업환경측정을 타기관이 실시하였을 경우 특수검진기관에서 측정예비조사 실시 또는 타기관 측정결과 활용방안 강구
- 사. 분석검사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**
- 전문인력과 시설의 공동활용(의료기관간의 불필요한 시설장비 중복투자 해소)
 - 분석검사의 전문화로 신뢰, 정확성 확보
- 아. 보건관리의무 성실행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**
-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우려가 없고, 평소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산업의학전문의의 평가 추천에 따라 특수검진 격년제 실시
 -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였다해도 은폐 또는 축소를 기도하지 않고,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장에 대해 처벌규제 행정보다는 선도행정으로 자율의욕고취
- 4. 연구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**
- 가. 특수검진항목(1, 2차) 및 선택항목**
- 나. 직업병유소견자와 산재보상을 위한 인정기준과의 진단 연계방안**
- 다.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**
- 라. 유소견자 추적관리 대상기준(유해물질별, 증상별)**
- 마. 건강관리구분 재분류**
- 바.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양식(1장으로 통합, 전산용)**
- 사. 특수검사항목 및 분석료에 대한 수가산출**